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477
----------	------

발의연월일 : 2021. 3. 3.

발 의 자 : 김성원 · 이주환 · 배현진
박대수 · 윤상현 · 추경호
김 용 · 김형동 · 이종배
이 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통합환경허가제도는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종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하여 최적의 환경관리를 수행하고자 2017년에 도입되었음.

이러한 동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기준에 불확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통합환경허가에 붙일 수 있는 허가조건에 내용적 한계나 절차적 기준이 없어 그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행정청의 재량이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점, 사전협의를 사업자의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의무사항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음.

이에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조건에 내용적·절차적 기준

을 신설하며, 사전협의를 사전검토로 변경하고, 허가신청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신청인의 정보제공요청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법 개정으로 허가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배출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42조제1호 신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사전협의)”를“(사전검토 및 정보제공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협의를 신청할”을 “사전검토를 요청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 내용”을 “요청 내용”으로, “신청인에게”를 “요청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 신청”을 “제4항까지에 따른 사전검토 및 정보제공”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이외의 용도로 해당 자료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785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허가조건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⑩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조건을 붙이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 할 것
법률 제1785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 ⑨ (생략)

<신설>

제7조(허가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할 것

3. (생략)

② ~ ⑥ (생략)

법률 제1785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그 밖의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④ ~ ⑨ (현행과 같음)

⑩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조건을 붙이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허가기준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 할 것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85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 6. (생 략)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
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
료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
성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 누설한 자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
호까지와 같음)